

92100 잔디파종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절은 잔디파종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잔디파종 재료
2. 잔디파종

1.2 관련 시방절(SECTION)

1.2.1 91200 식재지반 조성

1.2.2 92200 잔디식재

1.2.3 93000 수목 및 지피·초화류 식재

1.2.4 94000 유지관리

1.3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M 3509 - 88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2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1.4 제출물

『03110 제출자료』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량 및 제출기한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1.4.1 견본

제출견본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견본 항목의 가감은 발주시방에 따른다.)

1. 파종잔디 재료

2. 농약(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
3. 비료
4. 종자혼합용 모래
5. 피복용 폴리에틸렌 필름

1.4.2 품질시험 성과표

(아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제품 또는 자재는 발주시방에 따른다.)

1. 반입될 제품 및 자재에 대해서는 KS표시 인증사본, 품질인증 승인서류 사본,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받은 형식승인서류 사본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또는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과표 또는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자체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잔디종자를 이절 "2.3.1 항" 의 자재품질관리 시험항목에 따라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승인 받아야 한다.

1.4.3 제품자료

1. 『03210 시공상세도면, 재료공급원 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제출자료』 절의 "1.7 제품자료" 에 따른다.
2. 수급인은 1항에 따라 제품 및 자재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출목록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3. 수급인은 잔디종자 사양서 경우에는 종자의 원산지 증명, 품질보증서, 중량, 발아율, 순도, 입도, 생산업체의 종자생산현황, 기술자료 및 파종지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4.4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수급인은 시공전 이 절 "3부. 시공" 내용에 따라 시공상태 검측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수급인은 잔디파종 작업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잔디파종 면적이 [10,000] [] m² 미만인 경우 시험시공을 생략할 수 있다.

1. 잔디파종

(1) 시험시공량: $10\text{m} \times 10\text{m} \text{ m}^2$

(2) 횡수: [10,000] [] m^2 마다 1회

1.6 운반, 보관, 취급

각 제품 및 자재의 보관 및 취급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그 내용에 부합되게 보관하여야 한다.

1.7 시공환경 요구사항

1.7.1 강우시 또는 명시된 온도 이하 또는 이상에서는 감리원이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잔디 파종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1.7.2 풍속 2.24m/sec (5마일/hr) 이상일때는 파종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1.7.3 별도 발주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파종시기의 일반적 기준은 난지형 잔디는 5 ~ 6 월, 한지형 잔디는 3 ~ 4월 또는 9 ~ 10월에 파종을 실시한다 .

1.7.4 파종부적기 및 기타사항

파종부적기의 공사시행 및 공사기한 이월에 대한 사항은 『93200 수목식재』 절의 "1.8.2 식재부적기 및 기타사항"에 따른다.

2 부.자재

2.1 재료

2.1.1 파종잔디종자 재료

1. 지정종자의 g당 입수는 명시된 규정치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종자의 발아율은 명시된 규정치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정종자의 순량율은 명시된 규정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지정종자는 전년도 채취종자이어야 하며 2년 이내에 채취한것 중에서 발아율이 규정치 이상일 경우는 그 종자를 사용할 수 있다
5. 지정종자는 명시된 특정구비요건에 만족해야 한다.(특정구비요건이 없을 경우는 본항을 삭제한다.)

2.1.2 살충제

1.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이어야 한다.
2. 제조업체의 제품사양 또는 발주시방에 따른다.

2.1.3 비료

1. 『93100 수목이식』 절의 "2.1.3 비료"항에 따른다.

2. 복합비료로 구성성분비는 (N - 21, P - 17, K - 17) 이어야 한다.

2.1.4 종자 혼합용 모래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2.1.5 피복용 폴리에틸렌 필름

1. 『KS M 3509』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2. 두께는 [0.03] []m/m 이어야 한다.

2.1.6 관수용 물

『93200 수목식재』 절의 "2.1.6 관수용 물"에 따른다

2.2 자재 허용차

2.2.1 지정종자에 대한 품질허용기준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2.2.2 들잔디에 대한 품질허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1. g당 종자의 입수 : 1500개 이상

2. 발아율 : 60 % 이상

3. 순량율 : 98 % 이상

4. 발아촉진처리 된 종자

2.3 자재 품질관리

2.3.1 파종잔디 종자재료의 시험항목은 발아율, 순량율, g당 종자입수에 대한 시험을 실시 하여야 하며 추가적 사항은 발주시방에 따른다.

2.3.2 수급인은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자재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3.3 대체자재 사용에 대한 사항은 『05310 재료 및 기기』에 따른다.

3부. 시공

3.1 시공기준

파종종자 종류별 또는 혼합파종 등인 경우의 파종기준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3.1.1 들잔디 종자파종

1. 파종지는 경운기계로 20 cm 이상 갈아야 한다.

2. 농약(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등) 및 비료는 파종대상지 전면에서 제품사용설명서에 따라 균등하게 살포되어야 한다.
3. 잔돌, 기타 이물질은 깨끗하게 제거하여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4. 흙덩어리는 잘게 부수고 고른다.
5. 명시된 다짐기계로 균일하도록 가볍게 다진다.
6. 종자파종은 균일파종이 되어야 하며 파종량은 발주시방에 따른다.
7. 관수는 파종면의 침식이 방지될 수 있도록 관수를 시행하여야 하고 명시된 깊이까지 관수하여야 한다.
8. 적절한 수분유지와 토양온도유지를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벚짚]으로 피복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2 파종후 관리

1. 파종면 폴리에틸렌필름 제거시기는 발아후 싹이 웃자라거나, 고온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발아후 싹이 0.5 ~ 1.0 cm자랐을때 구름이 낄날 아침이나 저녁에 실시하여야 한다.
2. 파종지 건조를 감안 일정주기로 관수를 하여야 한다.
3. 발아후 2개월 경과시 제초를 실시 하여야 한다.
4. 발아후 [2] []개월 경과시 [0.05] []kg/m²의 복합비료를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3.2 보수 및 재시공

수급인은 파종후 [20] []일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서 고루 발아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하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기간내에 당초 파종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파종 실시 또는 기타의 감리원의 파종기준에 따라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 3.3.1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감리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3.2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않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